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호평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6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김호평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황규복, 김정태, 문장길,
성흠제, 봉양순, 이승미,
문병훈, 이광성, 오현정
의원 (9명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자체 감사결과만을 시의회에 보고하고,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를 기관 감사한 지적사항과 결과는 보고하고 있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있음.

이에 외부기관 감사결과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, 시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가.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현황 및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19조제2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보고)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
2.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9조(보고) 위원장은 감사결과 를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.</u></p>	<p><u>제19조(보고) 위원장은 각 호 사항 을 분기별로 서울특별시의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.</u></p> <p><u>1.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</u></p> <p><u>2.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서울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</u></p>